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00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23.

발 의 자 : 이만희 · 서천호 · 김소희
김기웅 · 권영진 · 엄태영
김상훈 · 구자근 · 박충권
이종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자연재해,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관광단지 지정과 관련된 면적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정권한을 시·도지사로부터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이양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특별재난 지역에 대해서도 관광단지 지정 시 적용되는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해당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특별재난 지역의 경제회복과 지역 공동체의 일상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52조).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제7항 중 “인구감소지역에”를 “인구감소지역 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”로, “인구감소지역을”을 “인구감소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을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특별재난지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지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2조(관광지의 지정 등) ① ~ ⑥ (생 략)	제52조(관광지의 지정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u>인구감소지역에</u> 속하는 지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<u>인구감소지역을</u>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⑦ ----- ----- ----- <u>인구감소지역 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</u> ----- ----- ----- <u>인구감소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을</u> ----- ----- <u>다</u> 만, 특별재난지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지정한다.
⑧ (생 략)	⑧ (현행과 같음)